

소 장

원 고 이석주 외 395 (별지1 목록 참고)
소송대리인 (별지2 목록 참고)

피 고 국방부장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 04383

부작위위법확인 등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사드 체계 배치사업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공고를 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사드 체계 배치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 이하 '사드 체계'라고 합니다)} 배치사업 예정지역으로 알려진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2길 129 인근 거주 주민들입니다(갑 제1호증 각 주민등록등본).

피고는 사드 체계 배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행정청으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관한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합니다) 제4조의 사업계획의 승인 주체이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주체입니다.

2. 기초 사실

가. 사드 체계의 의의

사드 체계란, 미국이 2005년 개발 완료하여 생산·배치한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체계'로서, 1개 포대는 포대통제소, 사격통제 레이더(TPY-2 TM)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북한 스킨드·노동·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급 이하 적 탄도미사일이 목표 지역을 향해 강하하는 종말단계에 직접파괴(hit-to-kill) 방식으로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국방부 사드 체계 안내 자료).

나. 사드 체계 배치결정 발표 경위

(1) 2013. 7.경 주한미군 사령관 커티스 스키퍼로티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배치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나, 한미 양국 간에 공식적으로 한반도 내 사드 체계 배치에 대하여 논의된 바는 없었습니다.

2016. 1. 29.경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 요청이 없었다, 다만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가 배치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2016. 2. 7.경, 피고는 갑작스럽게 “주한미군과 사이에 사드 체계 배치사업을 협의하기로 했다”며 사드 체계 배치 협의시작을 알렸고, 이후 2016. 7. 8.경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2016. 7. 8.자 국방부 보도자료¹⁾).

불과 5일 후인 2016. 7. 13.경에는 경상북도 성주 지역으로 사드 체계 부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2016. 7. 13.자 국방부 보도자료²⁾).

1) 한미(韓美), 주한미군에 THAAD 배치하기로 결정. 국방부. 2016.7.8.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 사드(THAAD)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차원의 결정을 하였다. 한미공동실무단은 수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

2) 한미(韓美),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 발표. 국방부. 2016.7.13.

“한미 공동 실무단은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적용하여 여러 후보지들에 대한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구조로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 장관이 승인했다.”

(3) 피고의 깜짝 발표에 성주 주민들, 국회는 사전에 의견 수렴 절차나 국회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성주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사드 체계 배치 반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2016. 9. 30.경 국방부는 사드 체계 배치 부지로 '최적지'라는 성주 성산포대를 배제하고,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이 있는 달마산(이하 '성주골프장'이라 합니다)을 새로운 부지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³⁾ (갑 제5호증 '국방부 사드부지 공식발표, 성주골프장이 최적지' MK 기사).

다. 사드 체계 배치결정 발표 이후 경과

피고는 롯데 측과 협의를 통해 국방부 소유의 남양주 소재 군 주둔지 일부와 성주골프장 부지의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현재 롯데 측은 이사회를 열어 해당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고는 롯데와 사이에 교환계약을 통해 성주골프장 부지를 이전받는 즉시, 성주골프장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철조망을 칠 예정이라고 합니다(갑 제6호증 2017. 2. 23.자 TV조선 기사).

그러나 피고는 성주골프장 사드 체계 배치사업과 관련하여 국방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 공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한반도 내 사드 체계 배치 결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전자파 등 인체 유해성, 부지 적합성, 제3부지 졸속발표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 국방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 공고를 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법성

가. 관계 법령

국방시설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방·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제4조(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③ 국방부장관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사업 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통보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사업계획 승인 및 공고의무

(1)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해당

사드 체계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국방시설사업법 제2조 제1호 바목)로써, 한반도 내 성주지역에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사업은 국방·군사시설사업(국방시설사업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합니다.

(2)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드 체계 배치사업은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국방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국방시설사업법 제4조 제1항).

피고는 "성주에 배치할 사드는 일본에 있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고, 광의 것과 유사하다"고 하였고(갑 제7호증 2016. 7. 18.자 한겨레 기사),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또한 "한국에 오는 사드포대는 광 포대보다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갑 제8호증 2016. 11. 4.연합뉴스 기사).

2015.경 미 육군이 실시한 광 환경성평가서(Environmental Assessment)에 따르면, “2013년 4월 전개된 사드 포대는 광 섬 북서쪽에 위치한 앤더슨 공군기지 내 ‘북서 필드’(Northwest Field. NWF)의 활주로 동쪽 끝 지역 약 237.4에이커(96.1헥타르)⁴⁾ 규모의 부지를 점유했다{During the initial deployment of the expeditionary THAAD system in April 2013, a 237.4-acre (96.1-hectare) emplacement area was occupied by Task Force Talon (Figure 2-2)}”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갑 제9호증 2015 광 환경영향평가서).

즉,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체계는 광에 배치된 사드 체계보다 더 큰 규모로 적어도 약 97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인 바, 국방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사업계획 공고 신청권

그렇다면, 사드 체계 배치사업을 하려는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피고는 사업계획 승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원고들은 사드 배치 사업예정지역으로 알려진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2길 129 인근 토지소유자 및 주민으로, 해당 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 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열

4) 참고로 237.4에이커는 약 97만 제곱미터입니다.

람권을 가지는 권리주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범규상 또는 조리상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공고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 피고의 사업계획 공고 부작위 위법

원고들은 2017. 1.경 피고에게 사드 체계 배치사업의 사업계획 공고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사드 체계 배치는 한국 정부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측이 군용지를 미측에 SOFA에 따라 공여한 후 미측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시설사업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현재까지 사업계획 공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 제10호증 2017. 2. 16. 국방부 회신).

그러나 ① 사드 체계 배치사업 중 외부시설과 기반 시설 공사비용은 모두 한국 측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갑 제11호증 2016. 11. 16.자 한겨레 기사) 한국 정부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② 국방시설사업법 제2조 제1호 바목은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 등”의 경우에도 “국방·군사시설”로 보아 국방시설사업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5).

위와 같이 사드 체계 배치사업은 국방시설사업법이 적용되며, 국방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동안 국방시설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공고를 하지 않고 있는 바, 피고의 사업계획 공고 부작위는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5) 무엇보다 국방시설사업법 어디에도 SOFA에 따라 부지를 공여받은 주한미군이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시설사업 적용이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4.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법성

가.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신청권

원고들은 사드 배치 사업예정지역으로 알려진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2길 129 인근 토지소유자 및 주민으로, 사드 체계 배치 사업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의 이익을 갖고, 위 환경상의 이익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는 사드 체계 배치 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줄 것을 신청할 권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 피고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작위의 위법

(1) 원고들은 2017. 1.경 피고에게 사드 체계 배치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사드 체계 배치사업은 미축 사업으로 국내법상 환경영향평가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다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12호증 2017. 2. 13. 국방부 회신).

(2)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드 체계 배치사업 중 외부시설과 기반 시설 공사비용은 모두 한국 측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한국 정부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② 일부 미축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내 환경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③ 환경영향평가법상 사드 체계 배치사업과 같은 '국방·군사

6) 법원은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제2활주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측에 전용공여된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SOFA에 국내 환경법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국내 환경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참고자료 서울행정법원 2011. 9. 28. 선고 2010구합19256 연합방위력증강사업승인처분무효 사건).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015년에 환경부가 발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갑 제13호증)을 보더라도,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 등을 국방·군사시설로 보고,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경우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방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발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갑 제13호증)을 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최근 TV조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피고가 성주골프장 부지 확보 후, 해당 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사드 체계 배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되며,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상당기간 동안 사드 체계 배치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피고가 사드 체계 배치사업에 대해 국방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부작위는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피고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언급하고 있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사드 체계 배치사업과 같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입 증 방 법

- 1. 갑 제1호증 각 주민등록등본
- 1. 갑 제2호증 국방부 홈페이지 사드 체계 안내 자료
- 1. 갑 제3호증 2016. 7. 8.자 국방부 보도자료
- 1. 갑 제4호증 2016. 7. 13.자 국방부 보도자료
- 1. 갑 제5호증 ‘국방부 사드부지 공식발표, 성주골프장이 최적지’ MK 기사
- 1. 갑 제6호증 2017. 2. 23.자 TV조선 기사
- 1. 갑 제7호증 2016. 7. 18.자 한겨레 기사
- 1. 갑 제8호증 2016. 11. 4.연합뉴스 기사
- 1. 갑 제9호증 2015년 광 환경영향평가서
- 1. 갑 제10호증 2017. 2. 16. 국방부 회신
- 1. 갑 제11호증 2016. 11. 16.자 한겨레 기사
- 1. 갑 제12호증 2017. 2. 13. 국방부 회신
- 1. 갑 제13호증 2015. 환경부 발간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참 고 자 료

- 1. 서울행정법원 2011. 9. 28. 선고 2010구합19256 판결문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입증방법 | 1부 |
| 1. 소장 부분 | 1부 |
| 1. 소송위임장 | 1부 |
| 1. 담당변호사지정서 | 1부 |

2017. 2. .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기재 생략)

서울행정법원

귀중